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규칙 (1987. 10. 20 법무부훈령 제200호)

개정 1992. 12. 17. 법무부훈령 273호
1995. 12. 30. 법무부훈령 356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급여하는 주식·부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부식의 기준열량) 피치료감호자에게 급여하는 주·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2,7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 3 조 (주식의 급여) ① 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으로 급여하되 1인당 1일 급여량은 쌀 470그램, 보리쌀 30그램 도합 500그램으로 한다.

② 치료감호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양곡의 수급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피치료감호자를 이송할 때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혼합율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질병의 상태, 성별, 연령, 체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식의 기준급여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부식의 급여) 부식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 급여하되, 피치료감호자의 기호에 맞도록 그 종류 및 표준 식품규격을 소장이 정하여 급여할 수 있다.

제 5 조 (식단의 변경) 소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기호에 맞지 않거나 풍부한 영양의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식을 대치하여 급여할 수 있다.

제 6 조 (특별급식)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치료감호자에게 특별급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쌀밥, 죽, 기타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 7 조 (주식과 부식 등의 비축) 소장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급식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용 정원의 2월분에 상당하는 주식과 급식용 연료 및 기본적인 부식을 항상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직공무원의보직관리기준 (1986. 9. 1. 법무부훈령 제171호)

개정 1987. 10. 23. 법무부훈령 201호
1988. 9. 15. 법무부훈령 209호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소속 의료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직관리원칙) 의료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 3 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의료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체적소에 보직한다.

② 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 본부 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동일업무 분야의 경력, 학력 및 별표 1의 보직요건을 고려하여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한다.

⑥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 4 조 (직위별 보직기준) ①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의 원칙, 보직관리의 일반기준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②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절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 5 조 (보직요건 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의사직위의 종류 중 제3호 이상의 직위
2. 간호사 직위의 종류 중 제2호 이상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하여 제①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 6 조 (전 보) ①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의 축적을 위하여 적절한 순환전보를 행한다.

② 기획, 관리, 서무 등 비전문적인 분야에는 장기근무에 따른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단위로 전보를 행한다.

제 7 조 (임용 또는 임용제청) 의료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여부를 별표 2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거 평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의료직공무원은 이 기준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보안감호소에 재직 중인 약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 위 별 보 직 기 준

기 관	직 위 명	요 건			
		경 력	학 력 및 전 공	자 격 증	기 타
치료감호소	소 장	정신과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의료업무 경력자	대 졸 (의학)	정신과 전문의	
	의료부장	정신과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의료업무 경력	대 졸 (의학 이상)	정신과 전문의	
소년원 소년감별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보안감호소	의무과장	의사자격취득후 계속해서 3년 이상 의료업무 경력	대 졸 (의학 이상)	의 사	
치료감호소	의료부 각과장 (일반진료과장, 간호과장 제외)	정신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의료업무 경력	대 졸 (의학 이상)	정신과 전문의	
	일반진료과장	· 내과전문의 · 일반의사로서 8년 이상 의료업무 경력	대 졸 (의학 이상)	내과전문의 또는 일반의사	

기 관	직 위 명	요 건			
		경 력	학 력 및 전 공	자격증	기타
소년원 소년감별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보안감호소	의 사		대 줄 (의학 이상)	의 사	
소년감별소	감별과 소속 의사(감별관)		대 줄 (의학 이상)	의 사	
치료감호소	의료부 각과 (일반진료과 제외) 의사		대 줄 (의학 이상)	의 사	
	일반진료과 의사		대 줄 (의학 이상)	치 과 의 사	
치료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보안감호소	약무담당 사 무 관	· 약사직위종류 제4호 나목의 직위에서 5년 이상 약사업무경력 · 약사로서 10년이상 약사업무경력	대 줄 (의학 이상)	약 사	
치료감호소	간호과장	· 간호사직위의 종류 제2호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간호업무경력 · 간호사로서 15년 이상 간호업무경력	전문대줄 이 상	간호사 조산사	

기 관	직 위 명	요 건			
		경 력	학 력 및 전 공	자격증	기타
치료감호소	간호담당	· 간호사직위종류 제3호의 직위에서 - 5년이상 간호업무 경력자 - 7년이상 간호업무 경력자 - 간호사로서 10년 이상 간호업무경력자	대줄이상 전문대줄 이 상 "	간호사 조산사 " "	
법무연수원 소년원 소년감별소 치료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보안감호소	간 호 사		전문대줄 이 상	간호사	

(별표2)

보직요건조사서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위	(년 월)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경 력	기 간	직 급	근무기관·부서 및 직위	담당직무명	
임용예정직위		직 무 내 용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별표 호 목 해당직위)					
구 분	보직기준 (법무부훈령제 호)	임용대상자	평 가		
경 력					
학력및전공					
자 격 증					
근무성적					
기타사항					
비 고					
조사자 직 위		성 명		①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1987. 10. 20. 법무부훈령 196호)

개정 1990. 8. 20. 법무부훈령 240호
 1993. 1. 18. 법무부훈령 274호
 1995. 12. 30. 법무부훈령 355호
 1997. 5. 15. 법무부훈령 38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감호자”라 한다)의 적절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준칙은 사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검사의 감호집행지휘를 받아 치료감호소(이하“감호소”라한다)에 입소한 자 및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호소에 위탁된 자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소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7장은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자로서 외래진료신청자, 제8장은 정신감정 유치된 자, 제9장은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되어 가수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감호자의 분류

제 3 조 (분류심사의 목적) 분류심사는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검사, 진찰, 상담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행한다.

- ① 분류급의 결정 또는 변경
- ② 수용병동의 결정 또는 변경
- ③ 치료, 계호, 교육 기타 처우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제 4 조 (분류심사의 종류와 시기) ① 감호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의 2종으로 한다.

- ② 신입심사는 감호소에 입소한 후 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③ 신입심사대상자가 합병증 기타사유로 분류심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분류심사를 연기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면 그때부터 1월 이내에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 ④ 재심사는 심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 5 조 (신입심사) ① 신입심사는 감호자를 수용할 병동을 정하고 전문

치료 및 개별처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호자의 과거병력 및 가족력, 정신질환별 분류, 정신상태, 심신장애 및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 등(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에 중독된 정도 등을 정신의학적으로 검사 진단하고 감호자의 전과, 범죄동기, 회수, 죄질, 연령, 교육, 경력, 환경, 신체상태, 가족관계, 병과된 형 등을 진단·분석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심사대상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심사함에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제 6 조 (분류심사사항) 분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① 병력관계
- ② 전과관계
- ③ 가족관계
- ④ 생육관계
- ⑤ 교육관계
- ⑥ 신체상태
- ⑦ 정신상태

제 7 조 (분류심사방법)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① 일반의학적검사, 정신의학적검사, 심리학적검사, 약물검사 등을 통하여 신체 및 정신상태를 파악한 다음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 등에 중독된 정도에 맞는 환경요법, 정신요법, 약물요법, 활동요법, 가족요법, 그 밖의 각종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 ② 현병력, 가족력, 개인력을 조사하여 정신과적 내력 및 환자의 인격을 알아보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 ③ 문진과 면접 및 관찰을 통하여 의사와 감호자 사이의 정신의학적 치료관계를 형성한다.
- ④ 범죄의 동기와 회수를 조사하여 개선의 곤란도와 사고발생의 가능성 여부 등 보안상의 위험도를 측정한다.
- ⑤ 출생, 성장과정 및 교육정도를 통하여 가정환경, 교양 및 지능지수를 측정하여 개선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⑥ 보호자의 유무, 근친, 교우관계 및 출소 후 생계관계와 경제적, 사회적 자립능력을 조사하여 사회복지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제 8 조 (관계기관 등에의 조회) ① 치료감호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류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병의원, 시, 읍, 면사무소, 법원, 검찰청, 교도소, 경찰서, 학교, 보호단체, 친족, 기타 직업상 관계 있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보를 받을 수 있다.

- ② 다만, 분류심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속하는 나라의 영사 또는 가족 기타 관계 있는 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분류심사표 작성비치) ① 분류심사결과는 감호자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류심사표를 작성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분류심사표는 이를 진료기록부에 편철한다.
- ③ 감호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분류심사표를 이송 받는 시설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 10 조 (재심사) 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 ① 신입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될 때
- ② 치료의 경과에 현격한 변화가 있어 수용장소를 타 병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③ 치료위탁 또는 종료·가종료 심사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될 때
- ④ 기타 소장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1 조 (감호자의 분류) ① 감호자는 각 정신질환별로 심신장애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양호 : 치료의 경과가 극히 양호하고,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향후 일정기간 정신의학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증 : 심신장애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정도가 경미하고, 통상적인 치료만으로 사회복귀가 예상되며,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3. 중증 : 심신장애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정도가 중하고, 정신과적 전문, 집중가료를 요하며,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감호자에 대한 정신질환별 분류는 국제질병분류에 의한 정신장애 분류기준표에 의한다.

제 3 장 감호자의 수용

제 12 조 (감호자의 수용장소) ① 남자와 여자는 분리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입자 및 감정유치자는 검사병동에, 마약류와 알콜에 중독된 자는 중독 치료병동에, 신체적 질병이나 특별한 관찰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중환자병동에 수용한다.

③ 입소 후 치료경과가 호전되어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감호자는 개방병동에 수용한다.

④ 제②항 및 제③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 이외의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장소는 담당의사가 제시한 의견을 참작하여 병동별 수용밀도 및 치료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 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⑤ 소장은 위 각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의의 임상연구를 위하여 교육 병동을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수용인원의 조절 기타 치료상 필요한 때에는 수용 장소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감호자의 수용방법) ① 감호자는 혼거수용하며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독거수용한다.

②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 병명,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에 중독된 구분에 따라 병실을 분리수용한다.

③ 소장은 감호자의 수용, 처우, 치료상 필요한 때에는 제①항, 제②항의 수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감호자의 치료

제 14 조 (치료의 기본방향) 감호자에 대한 치료는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15 조 (치 료) 감호자에 대하여는 치유를 위하여 그 증상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며,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호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6 조 (담당의사) ① 소장은 간호자가 입소하면 정신과 의사 중 1인을 간호자의 담당의사로 지정한다.

② 담당의사는 간호자의 퇴소시까지 모든 치유를 위하여 치료를 담당한다.

제 17 조 (자비치료) 간호자·가족 또는 보호자가 자비로서 보조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18 조 (외부병원 이송치료) ① 간호자가 정신과 외의 진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소내에서 치료함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장은 소외의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자를 소외 다른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소속의사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소외의 다른 병원에 이송된 자가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호소로 귀소 시키고 이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무기록) ① 담당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호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2. 주된 증상, 진단결과, 치료경과 및 예견
3.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4. 진료일시분

③ 간호기록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2. 투약에 관한 사항
3.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4.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5. 병실내 간호자의 행동에 관한 사항

④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는 치료감호종료·가종료 결정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⑤ 의무에 관한 기록에 대하여는 본 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일반의료관행에 따른다.

제 20 조 (진료심의위원회) ① 감호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감호소에 진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진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진료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의 타당성 여부
2. 투약의 적정여부
3. 감호자의 분류, 치료감호종료·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
4. 외래진료기간의 연장
5. 감정유치자에 대한 감정
6. 기타 본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진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감호자의 처우

제 21 조 (면회와 서신수발) 감호자에 대하여는 그의 친족 및 친지와 면회, 서신수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회 및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면회장소) 감호자의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회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

제 23 조 (면회참여 및 서신검열) ① 감호자의 면회에는 병동근무직원이 참여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의 참여 없이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② 감호자의 서신수발은 간호사가 검열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의 검열 없이 서신수발하게 할 수 있다.

③ 면회에 참여한 병동근무직원은 면회일지를 작성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전화통화) ① 담당의사는 증상이 양호하나 치료상 유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호자에게 친족, 친지에 한하여 병동직원 입회 하에 전화통화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통화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통화내용은 통화일지를 작성 기록유지한다.

② 전화통화 절차와 방법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25 조 (감호자의 두발) 감호자의 두발은 10센티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하되,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단삭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여자감호자의 두발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삭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차입물품 사용) 감호자에 대하여는 자기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치료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감호자의 복장) ① 감호자는 환자복을 착용하되 상의좌측 가슴에 이름표를 부착한다.

② 이름표는 병동별로 색깔을 구분하며; 감호자의 병실명, 수용번호, 성명 등을 기재한다.

③ 다만, 직업훈련이나 근로작업을 하는 감호자는 작업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 28 조 (감호자의 위생) ① 감호자는 그가 수용된 병실의 청결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감호자에게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병동 및 병실 등의 청결에 유의하여야 하고, 감호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격리 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③항의 경우에 있어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29 조 (목욕) ① 소장은 신입감호자에 대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목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호자에 대한 목욕의 회수는 감호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30 조 (텔레비전과 라디오 시청) 감호자에 대하여는 치료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방송내용과 시간을 정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제 31 조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① 감호자에 대하여는 체육대회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소장은 치료상 필요한 때에는 감호자의 가족 기타 지역 사회인사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감호자를 위하여 오락실 및 휴게실을 설치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으로 특기 및 취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32 조 (사회견학 등) ① 치료경과가 경증 및 양호 정도로 치유된 자로서 담당의사가 치료상 유익하다고 인정되어 추천하는 감호자에 대하여 사회 견학, 귀휴, 야유회 및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복을 착용시킬 수 있다.

제 33 조 (신문열람 등) ① 감호자가 원하는 경우 일간신문을 보게 할 수 있다. 다만, 담당의사가 치료상 필요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

② 병실에는 일간신문, 소내신문 등을 비치하되 감호자가 자비로 구독을 원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종류와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제 34 조 (도서열람) ① 감호자가 자기소유 도서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치료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치료상 필요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개방병동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도서실 자유출입 및 도서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도서실 출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35 조 (가족사진 비치) 개방병동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진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외의 자의 사진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 36 조 (자기사진 송부) ① 개방병동 및 특별병동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사진을 촬영하여 직계존속, 배우자, 기타 보호관계인에게 송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진촬영 및 송부에 필요한 비용은 감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37 조 (사진촬영 요령) ① 사진의 규격은 탈모상반신 명함판 이내로 한다.

② 사진은 직원이 촬영하며, 될 수 있는 한 사복을 착용시키고 번호표는 부착시키지 아니한다.

③ 사진촬영에 있어서는 병실 기타 감호소의 설비를 배경으로 할 수 있다.

제 38 조 (근로부과) ① 치료경과가 경증이상에 해당되는 감호자 중에서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근로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는 그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39 조 (교육·교회) 소장은 심신장애 등의 정도가 완치 및 양호에 해당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 2 (직업훈련) 소장은 감호자 퇴소 후 자립기반 조성 및 치료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① 직업훈련대상 : 증상이 치유되어 직업훈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감호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대상자 선발 및 훈련방법 등은 소장이 정한다.

제 40 조 (병동의 업무보조) ① 치료경과가 양호하고 다른 감호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병동내의 사무처리 기타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업무보조는 검신, 검방, 청소 등 일상적인 업무에 한한다.

제 41 조 (처우의 제외) 감정유치자에 대하여는 본 장에 규정된 처우의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6조 내지 제30조, 제34조 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 6 장 치료위탁과 종료 및 가종료

제 42 조 (동태보고) 소장은 사회보호법시행령 제11조 제①항에 의거 매2월 마다 감호자의 동태, 치료의 경과, 사회적응관계 및 심신장애의 정도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진료심의위원회 부의) ① 담당의사는 감호자가 치유되어 감호위 탁기관이나 사회에 복귀케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법 제35조의 2에 의한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 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감호자를 사회보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위탁 의견으로 진료심의 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하여는 담당의사의 의견서에 위탁기간까지 표시하 여야 한다.

제 44 조 (종료심사신청요청, 치료위탁 심사신청요청) 제43조에 의한 진료 심의위원회의 찬성결정이 있는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에게 종료 또는 치료위탁심사신청을 요청하고 사회보호법 제35조의 ②의 경우는 사회보호위원회에 송부한다.

- ① 심사신청요청서
- ② 치료감호 판결문 사본
- ③ 감호사건 당시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 사본
- ④ 분류심사표 사본
- ⑤ 진료기록부 사본
- ⑥ 담당의사 작성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
- ⑦ 소장의 의견서
- ⑧ 진료심의위원회 결정서 사본

제 45 조 (직권심사자료 송부) 소장은 사회보호법 제25조 제②항에 의거한 종료심사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동태보고서, 감호집행기록, 진단서 또는 정 신감정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회보호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만, 치료감호 종료의견일 경우에는 진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외 래 진 료

제 46 조 (외래진료의 요건 및 기간) ① 감호자의 치료감호종료 결정을 받거나 감호집행이 정지되어 퇴소한 후에도 계속 감호소의 외래진료를 받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감호자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할 수 있다.

② 외래진료기간은 퇴소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담당의사가 결정한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으로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 당의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료심의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 에서 외래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7 조 (진료방법) ① 외래진료는 담당의사의 면담, 감호소내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 증상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 한다.

②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감호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감호소에 입원시켜 치료할 수 없다.

제 48 조 (무료실시) 외래진료는 무료로 실시하며 약대 등 여하한 명목의 비용도 징수 할 수 없다.

제 49 조 (준용규정) 외래진료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래진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준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 8 장 정 신 감 정

제 50 조 (감정대상 및 기간) ①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여 법원 또는 검찰 및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의뢰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감정기간은 감정유치서의 기간에 의하되 감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장은 의뢰한 기관에 유치기일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제 51 조 (감정내용 및 방법) ① 감정내용

1. 정신질환 유무
2. 마약 및 약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흡입, 섭취, 주입, 습벽이 있거나 중독여부
3. 범죄와 관련성 여부 및 기타 감정의뢰 기관이 요구하는 법정신의학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감정방법

1. 소장은 감정상 필요한 때에는 병원, 시·읍·면사무소, 법원·검찰청·교도소·경찰서, 학교, 보호단체, 친족, 기타 직업상 관계 있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보를 받을 수 있다.

2. 감정은 담당의사가 진단 및 감정을 하고 감정사항을 진료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52 조 (감정의사) 소장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사 1인을 정신감정의사로 지정 피감정인의 입소일로부터 퇴소할 때까지 감정 및 감정기간 중 최소한의 치료를 담당한다.

제 53 조 (입 소) ① 감정의뢰는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② 소장은 감정의뢰에 관하여 정신감정의사 추천서와 입소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피감정인 인수는 치료감호소 내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1. 정신감정유치장
2. 감정유치지휘서
3.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서 사본
4. 정신감정비용 지급확약서

제 54 조 (기록 및 증명서) ① 피감정자의 의무기록은 이 준칙 제19조에 준하되 감호자의 의무기록과 구분하여 기록유지하고 피감정자의 출소와 동시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정서의 발급은 의뢰기관에 한하며, 기타 경우 재소사실증명,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55 조 (비 용) ① 피감정자에 대한 수용, 진료, 급량, 감정료 등 감정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의뢰기관 부담으로 하고 이를 국고세입토록 한다.

- ②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진료비에 관하여는 의료보험수가에 준하여 산출하고 기타 비용은 피치료감호자 수용, 급량단가에 준한다.
- ③ 소장은 ②항에 불구하고 필요에 의하여 조정시행 할 수 있으며, 감정의 사에게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6 조 (퇴 소) ① 소장은 감정완료 후 의뢰기관에 정신감정서를 발송하고 동시에 즉시 신병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감정유치 만기일에 해당할 시는 신병인수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신병인도는 치료감호소 내에서 한다.
- ③ 소장은 감정 중에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합병증이 위중하여 외부병원 이송치료가 요구될 때에는 즉시 의뢰기관에 통보하여 퇴소시켜야 하고 외부병원 이송치료시의 진료비는 의뢰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7 조 (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정유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준칙 제5장을 준용한다.

제 9 장 가 수 용

제 58 조 (가수용 조건 및 기간) ① 감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된 자로서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 인도되기 전 일시 가수용할 수 있다.

- ② 가수용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장은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9 조 (수용장소 및 치료) ① 가수용자의 수용장소는 중환자병동을 원칙으로 하되 치료상 필요할 경우 소장이 변경할 수 있다.

- ② 가수용자의 담당의사는 치료감호집행정지 이전의 담당의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치료상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60 조 (치료감호집행정지 취소 건의) 소장은 가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집행정지 사유가 소멸 됐을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치료감호집행정지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제 61 조 (준용규정) 가수용자에 관하여 이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수용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준칙 제4장과 제5장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제 62 조 (준용법령) ① 치료감호집행에 관하여 이 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행형법, 동법시행령, 교정누진처우규정 등 교정관계법령 및 행형관행에 따른다.

- ② 정신감정유치에 관하여 이 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행형법, 동법시행령 및 행형관행과 의료관행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1987. 10.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3. 1.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 5. 15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피치료감호자 분류심사표

수용 번호	병동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 . . (만 세)
정신 상태	일반적 외모, 태도, 행동 : 의식 및 지남력 : 감정반응 상태 : 사고과정 및 반응 : 지각 및 기억력 : 일반지식 및 지능 : 판단력 및 병식 :			
병력 사항	입소당시의 증상			
	과거병력 및 가족병력사항			
신체 사항	신장 : 흉 위 : 체 중 : 시력 : 좌, 우 청력 : 혈액형 : 합병증 : 신체상황개요 및 특징			

담 당 의 사 의 견	진 단 명 : 향후 치료기간 : 향후 치료방법 : 증 상 정 도 : 양호, 경증, 중증 <u>예후 및 치료요법</u> 작성일자 19 담당의사 (서명)
담 당 의 사 의 견	진 단 명 : 증 상 정 도 : 양호, 경증, 중증 총 합 의 견 : 진료심의일자 19 진료심의위원장 (확인)

1. 진료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1987.11.19 내규 제16호)

개정 1992. 9. 15. 내규 제 56호
1996. 3. 1. 내규 제104호
1998. 12. 30. 내규 제152호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1997. 5. 15. 법무부 훈령 380호) 제4장 제20조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구 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일반정신과장, 사회정신과장, 특수치료과장, 감정과장, 신경과장, 감호과장, 일반진료과장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장 유고시는 제2조 제②항이 직제순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의 타당성 여부
2. 투약의 적정성 여부
3. 피감호자의 분류,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치료위탁심사
4. 외래진료 기간의 연장
5. 정신감정유치자에 대한 감정에 관한 사항
6. 피감호자의 이송 및 귀휴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조 (위원회 개최) 소장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의 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조(사무주관) 위원회는 의료부 일반정신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위원회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사무일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 8 조(보 고) 위원회 업무전담직원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피보호감호자근로보상금관리규칙(1982. 4. 10. 법무부령제241호)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사회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된 피보호감호자에게 과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보상금(이하 "근로보상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근로보상금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 3 조 (관리공무원의 임명) 보호감호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당해시설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중에서 근로보상금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근로보상금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 4 조 (관리공무원의 의무) 관리공무원은 근로보상금의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진다.

제 5 조 (근로보상금의 수령 및 예입) ①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되는 근로보상금은 이를 관리공무원이 수령한다.

② 관리공무원은 근로보상금을 지출관으로부터 수령한 때에는 그날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공무원은 근로보상금을 예입할 금융기관과 예금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피보호감호자 개인별로 구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는 피보호감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조 (예금통장의 관리) 피보호감호자 개인별 예금통장은 관리공무원이 일괄하여 보관·관리한다.

제 7 조 (예금액의 고지) ① 관리공무원은 피보호감호자 개인별 예금총액을 매분기 1회이상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로보상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피보호감호자 개인별로 근로보상금의 원리금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근로보상금의 지급) ① 근로보상금은 피보호감호자가 보호감호시설에서 출소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친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호감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출소전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근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본인의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3. 기타 소장이 감호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9 조 (근로보상금의 관리전환) 소장은 피보호감호자의 이송등으로 인하여 근로보상금을 다른 시설로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로보상금인계서에 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유류금의 처리) ① 피보호감호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한 경우 그 유류금은 행형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유류금은 유류금정리부에 등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 11 조 (지급 누락된 근로보상금의 처리) ① 피보호감호자가 출소할 때에 지급이 누락된 근로보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근로보상금지급누락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제2항의 누락금은 출소일로부터 1월이내에 2회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최고하여야 하며, 계속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간호사·간호조무원 복무 규정 (1988. 2. 10 내규 제24호)

개정 1996. 2. 1. 내규 제 96호
1998. 12. 30. 내규 제140호

제 1 장 간 호 사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간호사의 복무에 대하여 다른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호사무관이라 함은 간호과장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의 근무상황 및 간호업무 등을 지휘, 감독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2. 수간호사라 함은 간호과장의 지시를 받아 병동별 단위 책임자로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근무상황 및 제반 병동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3. 책임간호사는 수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4. 간호사라 함은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제 4 조 (간호사무관의 임무) ① 행정담당간호사무관

1. 행정담당간호사무관은 간호과장의 지시를 받아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의 근무상황 및 간호업무, 간호행정 업무 등을 관장한다.

2. 대외적인 간호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병동간호사를 지휘 감독한다.
3. 응급환자 발생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교육담당간호사무관

1. 교육담당 간호사무관은 간호과장의 지시를 받아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의 교육을 총괄하며, 간호업무 등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한다.
2. 피치료감호자의 지급품 관리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 확인한다.
3. 간호기록 및 기타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4. 피치료감호자의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

제 5 조 (수간호사의 임무) ① 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원의 근무상황과 간호업무 등을 점검, 관리한다.

② 병동시설, 장비 및 일반물품을 관리한다.

③ 진료기록부, 병동업무일지 등 병동내 비치장부를 관리한다.

제 6 조 (책임간호사의 임무) ① 피감호자 등의 간호활동을 주된 임무로 한다.

② 수간호사의 임무를 보좌하며 간호사의 임무를 관리한다.

제 7 조 (간호사의 임무) ① 피감호자의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② 병동내의 각종 기구 및 물품을 관리한다.

③ 피감호자의 간호기록 및 병실 환경정리를 담당한다.

제 8 조 (근무시간) ① 수간호사의 출퇴근시간은 일반직원과 동일하고 간호사의 근무는 1일 3교대로 하며,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낮 번 (07:00 ~ 15:00)

○ 초 번 (15:00 ~ 22:00)

○ 밤 번 (22:00 ~ 07:00)

② 근무일정표에 의해 교대근무를 하여야 한다.

- ③ 근무일정표는 수간호사가 작성하여 간호과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④ 근무일정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호과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⑤ 교대근무자 유고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연장근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간호사의 휴무는 1주일에 1.5일로 하되, 병동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간호당직) 치료감호소 당직근무지침에 의한다.

- 제 10 조 (순환근무) ① 간호사의 근무부서 변경은 순환근무제로 하되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간호과장은 간호사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③ 소장은 기관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간 호 조 무 원

제 11 조 (목 적) 이 규정은 간호조무원의 간호조무 및 간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조무원의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간호조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12 조 (적용 범위) 간호조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책임간호조무원이라 함은 병동간호조무원의 책임자로서 간호조무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일반간호조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2. 간호조무원이라 함은 간호조무 및 간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14 조 (간호조무원의 임무) ① 책임간호조무원은 월중 근무일정표를 작성한다.

- ② 책임간호조무원은 간호조무원의 간호조무 및 간호업무 수행상황을 점검, 확인한다.
- ③ 병실을 수시로 순찰, 점검하여 수용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④ 피감호자 이송 또는 병실외 이동시 간호업무를 담당한다.
- ⑤ 피감호자의 복약시 이를 점검, 확인한다.
- ⑥ 병실청결 유지, 침상정리, 목욕실시, 세탁관리, 배식관리 등 피감호자의 일상생활을 지도한다.
- ⑦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 ⑧ 취침전 개인위생 상태 등 청결여부를 점검하고 취침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⑨ 면회자를 안내하고 면회시 입회하여 대화내용을 기록유지하고 면회종료시 몸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⑩ 피감호자의 난동 등 응급사태 발생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조치하여야 한다.
- ⑪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긴급후송 등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⑫ 피감호자의 병실 외부출입시 몸검사를 철저히 하고 병실을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 ⑬ 근무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이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일반정신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⑭ 기타 병동장 또는 간호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근무시간) ① 책임간호조무원의 출퇴근시간은 일반직원과 동일하며, 간호조무원은 1일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낮 번 : 07:00 ~ 15:00
- 초 번 : 15:00 ~ 22:00
- 밤 번 : 22:00 ~ 07:00

- ② 3교대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병동근무 사정에 따라 일반정신과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근무일정표는 책임간호조무원이 작성하여 병동수간호사의 확인 후 일반정신과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④ 근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정신과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⑤ 교대 근무자의 유고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연장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휴무일수는 주간 1.5일로 하되 병동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간호조무원 당직) 치료감호소 당직근무지침에 의한다.

제 17 조 (순환 근무) ① 간호조무원의 근무부서 변경은 순환근무제로 하되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일반정신과장은 간호조무원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③ 소장은 기관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18 조 (준용 규정) 간호사 및 간호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 및 치료감호소 당직근무지침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폐지) 간호사복무규정(내규 제95호), 간호조무원복무규정(내규 제96호)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 진료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1987.11.19 내규 제16호)

개정 1992. 9. 15. 내규 제 56호
1996. 3. 1. 내규 제104호
1998. 12. 30. 내규 제152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1997. 5. 15. 법무부 훈령 380호) 제4장 제20조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구 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일반정신과장, 사회정신과장, 특수치료과장, 감정과장, 신경과장, 감호과장, 일반진료과장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장 유고시는 제2조 제②항이 직제순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의 타당성 여부
2. 투약의 적정성 여부
3. 피감호자의 분류,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치료위탁심사
4. 외래진료 기간의 연장
5. 정신감정유치자에 대한 감정에 관한 사항
6. 피감호자의 이송 및 귀휴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조 (위원회 개최) 소장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의 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조(사무주관) 위원회는 의료부 일반정신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위원회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사무일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 8 조(보고) 위원회 업무전담직원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Handwritten notes and stamps on the right page. Includes a large stamp: "556 第2章 保安課 業務" and "保護監護所 業務處理指針" with a date "제 250호 (81. 11. 25)". There are also handwritten numbers like "016-249" and "0083".

(3) 行刑法適用上の用語定義

行刑關係法令에서

- 矯正所는 監護所로
- 受刑者 또는 收容者는 監護者로 본다.

3. 用語解説

(1) 被保護監護者

- 保護監護의 宣告를 받은 者
- “監護者”로 通稱한다.

(2) 被治療監護者

- 治療監護의 宣告를 받아 治療監護所에 收容治療 措置를 受
- 治療監護者로 通稱한다.

(3) 被保護觀察者

- 保護觀察이 開始되어 保護觀察擔當者의 指導와 監督을 受는 者
- 保護觀察者로 通稱한다.

(4) 被監護者 : 被保護監護者와 被治療監護者

(5) 被保護者 : 被監護者와 被保護觀察者

4. 保護處分의 種類

(1) 保護監護

保安監護處分을 받은 者를 監護所에 收容하여 監護敎化 하고 社會復歸에 필요한 職業訓練과 勤勞를 課하는 保護處分(法 第7條 第1項)

(2) 治療監護

治療監護處分을 받은 者를 治療監護所에 收容하여 治療措置하는 保護處分(法 第7條 第1項)

(3) 保護觀察

一定한 遵守事項을 履行하고 保護觀察擔當者의 指導監督을 受는 保護處分으로(法 第7條 第1項)

- 被保護監護者가 假出所한 때
- 被治療監護者가 治療委託된 때

- 併科된 刑執行 중 假釋放된 후 失効나 取消됨이 없이 殘刑期를 經過한 時에 當然開始

5. 保護監護의 內容

(1) 監護의 內容

監護敎化 및 社會復歸에 必要한 職業訓練과 勤勞를 課한다(法 第7條 第1項 第3條 第1項)

※ 여기서 勤勞라 함은 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課하는 單純勞動(炊事, 清掃, 其他 雜務)과 定規科目으로 採擇된 職業訓練 이외의 生産作業, 營農作業을 指한다.

(2) 他機關委託

監護者의 監護敎化, 職業訓練 및 勤勞를 위하여 必要한 때는 委託를 受는 機關 委託期間, 內容 등을 社會保護委員會의 承認을 受는 他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法 第7條 第2項, 令 第3條 第2項).

6. 收容節次

(1) 對象

- 法 第5條에 의하여 保護監護宣告를 受는 者
- 法 附則 第5條에 의하여 保護監護決定을 受는 者

(2) 要件

- 監護判決書謄本 또는 監護決定書謄本을 添附한 管轄檢事의 監護執行指揮官이 있을 것(法 第22條 第1項).
- 行刑法上의 收容拒絕事由가 없을 것.
- 數個의 保護監護 判決이 있는 때는 監護期間 또는 殘餘 監護期間이 長期인 監護處分 만을 執行한다(法 第23條 第2項).

(3) 行政事項

- 監護者의 引受收容에 따른 行政節次(身分카드 作成, 區有番號附與, 健康診斷, 金品の 領置, 新入者教育, 其他)는 矯正所 收容節次에 의한다.
- 이 指針에서 別紙書式은 社會保護法 施行規則이 定하는 書式을, 別表書式은 이 指針에 添附된 書式을 말한다.

7. 收容區分

所別 區分	第1監護所	第2監護所	第3監護所
收容對象	行狀下級者 新入者(分類期間)	行狀中級者	行狀上級者
收容方法	獨居原則	混居 및 獨居	混居原則
女子監護者			女子收容室 隔離收容

女子監護者는 靑松 第3施設 完工時까지 第2監護施設(代用施設)에 收容

8. 處遇

(1) 原則

- ① 行刑關係法令에 의한 處遇(法 第42條)
- ② 處遇準則
- ③ 保護監護所 業務處理指針

(2) 基本方向

- ① 刑罰보다 自由를 고 緩和된 處遇
- ② 改善의 程度에 따른 段階別 處遇(3段階區分)
- ③ 社會適應能力 培養에 重點을 둔 精神教育 및 職業訓練 強化
- ④ 合理的인 分類審査로 個別處遇의 效率化

(3) 收容

- ① 新入者는 獨居收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其他 獨居收容할 者의 順位
監護者의 獨居收容은 다른 法令에 特例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順位에 의한다.
○ 規律違反者
○ 處遇上 特히 問題가 있는 者(要觀察者)
○ 行狀下級者
- ③ 一時收容
行刑法 第55條에 의한다.

(4) 接見과 書信의 回數(處遇準則 第12條)

- ① 行狀下級者 月 2회 2通
- ② 行狀中級者 月 3회 3通

③ 行狀上級者 : 隨時

(5) 給與

① 被服

保護監護者 被服의 色彩는 茶褐色으로 하고 制式은 「在所者 衣類式規程」에 의한다.

② 給養

在所者 主·副食 給與規則에 의하되 主食 最低等級은 3等食으로 한다.

(6) 衛生과 醫保

監護者의 頭髮은 短削한다. 다만, 行狀上級者는 短削을 免할 수 있다(法 第16條).

(7) 作業

- ① 技術習得을 위한 職業訓練을 制限한 勤勞는 本人의 同意가 있을 때 한다(法 第7條 第1項).
- ② 勤勞에 當하는 監護者에게는 1日 1,500원의 범위에서 行狀 및 作業의 成績에 따라 勤勞補償金을 支給한다.
- ③ 勤勞等級 및 補償金 計算

○ 勤勞補償金 日額

等級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9級	10級
金額	1,500원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250 教育生

○ 勤勞等級査定

- 重勞動(木工, 塗裝 등) 7級~1級
- 輕勞動(清掃夫, 整理夫 등) 9級~1級
- 教育生

新入者 : 10等級 日額支給

勤勞中 編入者 : 編入時 等級日額의 1/2 支給

○ 作業成績別 配分

作業成績別 人員配分은 다음 表에 의한다.

· 作業成績 配分率表

作業成績	秀	優	美	良	可
人員配分	10%	20%	40%	20%	10%

○昇級 및 降級
·昇級所要期間

作業成績	優	美	良	可
昇級期間	3月	10月	12月	14月

- 行狀不良者의 作業等級 昇級停止
行狀昇級이 停止되거나 降級된 期間은 作業等級 昇級所要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特別昇級
技術이 卓越하고 行狀이 優良한 者は 相當한 等級에 遷入시킬 수 있다.
- 降級 및 降級
勤勞成績 不良者는 勤勞를 取消하거나 勤勞等級을 降級 또는 降級할 수 있다.
等級의 降級은 1等級으로 하고 降級은 6월 이내로 한다.

○附則該當者의 等級査定

法附則 第5條에 의한 監護者의 最初等級은 輕勞動就業者는 5等級에 重勞動就業者는 3等級에 遷入한다.

(8) 領置(勤勞補償金의 管理)

- ① 監護者 勤勞補償金은 每月末 1개월 분을 計算하여 領置金과는 別途의 計定으로 本人의 口座에 領置하여야 한다.
- ② 領置된 補償金은 歲入歲出外 現金出納公務員이 管理한다
- ③ 勤勞補償金의 自己使用은 處遇指針 第34條의 規定에 의한다.
 - 行狀下級者 : 1/4 이내
 - 行狀中級者 : 1/3 이내
 - 行狀上級者 : 1/2 이내

(9) 賞 罰

監護者의 懲罰은 受刑者 懲罰關係法令에 의한다. 다만, 行刑法 第46條 第2項 第5號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0) 動態報告

- ① 監護所長은 매 6월마다 監護者의 動態, 行狀의 良否, 其他 필요한 事項을 別紙 第17號 書式에 의하여 管轄 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 經由, 社會保護委

562 第2章 保安課 業務

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令 第11條 第1項, 規則 第19條).

- ② 監護所長은 職權假出所 審査期間滿了 3個月前에 監護者의 行狀 點數 등 審査에 필요한 資料를 社會保護委員會(參照: 調整課長)에 送附한다(處遇準則 第73條)

(11) 假 出 所

① 要 件

- 監護執行開始後 2년이 經過한 者 中
- 監護行狀 中級 또는 上級者로서
- 改俊의 情이 顯著하고 再犯의 危險이 없다고 認定되는 者(令 第11條)

② 審査要請前次

- 要件該當者는 行狀管理會議에서 그 適否를 審査하여 假出所합이 適當하고 인정되는 者는 假出所 要請, 審査委員會에 回附한다(處遇準則 第71條 第1項).
- 假出所要請審査委員會에서 審査要請決定이 있는 者는 關係書類를 添附하여 管轄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檢事에게 假出所審査申請을 要請한다(令 第11條 第1項, 處遇準則 第72條).

③ 具備書類

- 假出所審査 申請要請書(別紙 第27號 書式)
- 假出所要請審査委員會 決定書寫本(處遇準則 第72條 第5號)
<參考> 假出所審査 및 身元調査表의 委員意見으로 加添한다)
- 假出所審査 및 身元調査表(別表 第1號 書式)
- 所長意見書(別紙 第26號 書式)
- 動態報告書(別紙 第17號 書式)
- 假出所審査表(別紙 第2號 書式)
- 保護監護判決書·決定書 寫本
- 其他 審査에 참고될 事項(指紋照會, 身上照會 등)

④ 報 告

假出所審査 申請을 要請할 때에는 假出所審査表 1部를 作成하여 法務部長官(參照: 保安課長)에게 報告한다.

(1) 假出

① 出

監

所

時

(4

② 出

監

保

所

③ 申

請

出

所

④ 1

C

(2) 1

①

②

(3)

(2) 1

①

②

(3)

9. 釋放

(1) 假出所 釋放

① 出所前 申告

監護者가 假出所할 때에는 監護所長은 事前에 假出所者의 本籍, 入所前 住所, 姓名, 生年月日, 性別, 出所後의 住居豫定地, 居住豫定地 到着豫定日時, 기타 필요한 事項을 別紙 第19號 書式에 의하여 申告받아야 한다.
(令 第14條 第1項, 規則 第21條 第1項)

② 出所 通報

監護所長은 監護者가 假出所하면 社會保護委員會와 出所後 居住豫定地 管轄 保護觀察擔當者에게 別紙 第20號 書式에 의한 出所通報를 하고 1部는 保管 하여야 한다(令 第14條 第2項, 規則 第21條 第2項).

③ 申告義務의 告知

監護所長은 監護者가 出所할 때에는 罪를 다시 犯하지 않도록 嚴重訓戒하고 出所後 1월 이내에 保護觀察擔當者에게 別紙 第21號 書式에 의한 申告를 書面으로 하도록 告知하며 社會保護委員會에서 결정된 遵守事項을 告知하여야 한다(法 第29條 第1項, 令 第13條).

④ 假出所 取消時의 措置

- 法 第30條에 의하여 假出所 取消決定되어 管轄 保護觀察 擔當者로부터 同 事實을 通報받았을 때에는 監護所長은 監護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檢察에게 保護拘引을 依頼할 수 있다(規則 第25條 第1項).
- 法 第30條 第1項에 의하여 假出所 取消된 者의 假出所 期間日數는 保護 監護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令 第30條 第2項).

(2) 期間滿了 出所

① 出所 日

監護期間 滿了日에 釋放한다(行刑法 第54條 第3項).

② 監護期間의 算定

監護期間의 算定은 受刑者 刑期計算方法에 의한다.

(3) 監護執行의 停止 出所

刑事訴訟法 第471條 第1項 各號의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監護所長은 管轄檢察에게 監護執行停止 建議를 하여야 한다(法 第31條, 行刑法施行令 第17條).

10. 保安(警備)

(1) 通則

- ① 矯導所 保安關係法令, 例規 其他 指示公文 및 戒護履行에 의함
- ② 警備區域의 分擔, 警備責任, 衛兵所의 運營, 勤務要領 등은 3個 監護所 協議하여 정한다.
- ③ 分擔區域內의 警備 區域內의 警備哨所의 位置, 規模 등은 當該 所長이 정한다.

(2) 外部出役時의 戒護

① 外部出役時의 戒護職員은 警備組와 指導組로 區分한다.

② 編成

警備組는 警備矯導 또는 矯導官으로, 指導組는 保安擔當 및 作業擔當 人員으로 編成한다.

③ 警備 方法

- 警備組는 組長의 指揮를 받아 監護者가 出役하기 前에 作業場所 周圍要所에 位置하여 監護者와 隔離된 距離를 維持하면서 包圍警備에 臨한다.
- 指導組는 作業現場에서 作業을 指揮督勵하고 直接戒護에 臨한다.

④ 武器攜帶 警備組~銃器 및 實彈攜帶
指導組~矯導棒攜帶

11. 執行順序 및 方法(法 第23條)

(1) 刑의 先執行

保護監護와 刑이 併科된 때에는(保護監護期間 중 刑이 併科된 경우 포함)刑을 먼저 執行한다.

(2) 治療監護의 先執行

治療監護는 刑보다 먼저 執行한다.
이 경우 治療監護期間은 刑期에 算入한다

12. 監護併科者 身分카드 管理 등

(1) 身分카드 管理

矯導所長은 監護處分이 併科된 受刑者의 身分카드의 判決罪名欄과 滿期歷簿의 刑名·刑期欄에 「保護監護」라고 朱記하여야 한다(規則 第24條 第2項).

(2) 出所 豫定通報

矯導所長은 監護併科者의 滿期가 到來한 때에는 刑期終了日 1個月 前에 刑의 執行을 指揮한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에게 終了豫定日 其他 監護執行指揮에 참고될 事項을 通報하여야 한다(規則 第24條 第3項).

(3) 治療監護 終了通報

治療監護所長은 治療監護 終了決定을 받은 被治療監護者가 殘刑期가 있을 때에는 즉시 治療監護를 指揮한 檢事에게 治療監護終了와 殘刑期 等を 通報하여야 한다(規則 第24條 第5項).

(4) 一時收容

刑의 執行이 종료된 被保護 監護者와 治療監護 終了決定을 받고 殘刑을 집행할 受刑者를 監護所 또는 矯導所로 移送하는 경우 移送에 필요한 期間, 矯導所 또는 治療監護所에 一時收容할 수 있다(規則 第26條).

13. 監護處分 併科者의 假釋放

(1) 事前同意

矯導所長은 保護監護가 併科된 受刑者를 假釋放코자 할 때에는 事前에 社會保護委員會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法 第26條 第1項).

(2) 同意要請 節次

受刑者의 假釋放具申 1件書類 기타 의사결정에 참고될 書類를 첨부한 同意要請書를 刑의 執行을 指揮한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經由, 社會保護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3) 具備 書類

- ① 假釋放具申 同意要請書(公文)
- ② 假釋放具申 1件書類
- ③ 假釋放審査委員會 委員長意見書(別表 第1號 書式)
- ④ 其他 參考事項

(4) 釋放

① 出所 通報

保護監護가 併科된 受刑者를 假釋放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別紙 第22號 書式에 의한 假釋放者 出所通報書를 작성하여 社會保護委員會 및 歸住地 保護觀察 擔當者에게 送付하고 1部는 保管하여야 한다(規則 第22條).

② 告知 事項

- 社會保護委員會에서 決定된 個人別 遵守事項의 告知(法 第32條 第1項, 令 第21條 第1項)
- 假釋放 된 후 取消 또는 失效됨이 없이 殘刑期가 經過되어 刑期가 滿期가 되면 刑期滿了 후 1월 이내에 令 第14條 第4項이 定하는 時限內에 保護觀察 擔當者에게 書面으로 신고하도록 告知하여야 한다(法 第34條 第1項, 令 第14條 第4項).

(5) 假釋放者 動態通報

假釋放團束規程 第4條에 의한 關係機關 通報時에는 保護監護의 判決法院 年月日, 監護期間, 監護의 要件이 된 前科 및 犯罪事實의 要旨를 함께 通報한다(規則 第23條 第1項).

<제1호 서식>

假出所審査 및 身元調査表

계 호	성 명			
감호종류, 기간	범 수		성 명	
집 행 처	년	월	일	잔여기간
경 력 및 생	년	월	일	일
진건 및 석신	진건	회	발신	회
보호자의 주소	주소			
성명	성명			
연령·관계	연령·관계			
생활 상태	생활 상태			
본인과 피해자와 의감정	출소후의 생 계			
진, 강 상태				
정 신 상태	작업등급			
사상 및 신앙				
기 타 참 고 사 항				
위 원 의 견	추 시 상 신	지 정 상 신	사 기 상 조	불 러
	②	②	②	

<제2호 서식>

假出所審査表 第 保護監護所

姓名 (年齢)	處分の概要 (受刑に就 犯罪概要)	監護 期間	起算日	終了日	執行所	後刑	犯保 期間	保 行狀	收容生活態度 (특히 考慮할 決定項) 事項)
------------	----------------------	----------	-----	-----	-----	----	----------	---------	-------------------------------

(8切紙 使用)

被保護監護 併科受刑者 處遇指針

예규보 제277호(83.6.21), 예규보 제284호(84.3.27)

대통령령 제11066호 코드스 직제 중 개정령(83.3.9)에 의거 청송 교도소에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수형자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보호감호 병과수형자 처우 지침을 시달하니 자체 실정에 알맞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처우지침 제정의 필요성

- (1) 피보호감호 병과수형자는 사실상의 장기수로 자포사기에 의한 사살, 도주, 폭동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상존되어 있음.
- (2) 청송 교도소에 피보호감호 병과수형자를 집금 수용 관리함으로써 일반 코드스와는 달리 특별한 보안 및 제호대책이 필요함.
- (3) 피보호감호 병과수형자는 병과형을 종료후 감호기간 7년-10년간 장기간에 걸쳐 감호와 교화로써 범죄 위험성 제거, 사회 적응 능력배양을 위한 정신적, 신체적, 직업적인 특수교육이 필요함.
- (4) 피보호감호 병과수형자는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로서는 사회 보호법상 보안처분의 목적의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5) 피보호감호 병과수형자는 일반수형자보다 더 면밀한 분류심사가 요청되고 형집행 중 개전의 징이 현저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석방을 할 경우에도 일반수형자와는 달리 별도의 절차(사회보호위원회의 동의 요)가 필요함.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보호감호 병과수형자의 처우지침을 제정, 시행

572 第2章 保安課業務

주민등록번호

성명
직책

1. 상기 본인은 19

○○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저는 피치로 감호자들의 치료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피치료감호자 ○○○○에 대한 관찰 사항을 기술하겠습니다.

피치로 감호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가족사항

재산상태

전과관계(범죄사실요지, 선고일자, 집행일자, 선고법원, 선고내용, 병과권 형 유무)

· 동력(군수사항 이행상태, 식사상태, 운동상태, 기타 행장)

· 치료정도, 무약내용, 향후 치료방향 및 전망

· 노동능력 여부

· 법진·서신여부

· 기타 참고 사항(피감호자의 특거·준거여부 등)

19

○○○

監護者 吊慰金 및 慰勞金 支給規則

예규 제251호(81.12.5)

개정. 83.2.14(예규 제 272호)

第1條(目的) 社會保護法 第42條 및 行刑法 第40條의 規定에 의거 監護者에 대한 吊慰金 및 慰勞金 支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支給金額) ① 吊慰金 및 慰勞金 支給金額은, 별표 1 吊慰金 및 慰勞金 支給 基準表와 별표 2. 身體障害等級 區分表에 의하여 支給한다.

② 支給申
으로 한다
다만, 所
의하고 處
必要하다
수 있다.

第3條(申請
을 때에
書式에

② 吊慰
를 添附
述書 및

第4條(吊慰
라 함은
死亡當

② 吊慰
願에 드

③ 所
야 하

第5條(慰勞
監護者

第6條(支給
金額

이 規則

(1) 이
(2) 이
事

② 支給申請金額은 別表 1. 吊慰金 및 慰勞金 支給基準表의 平均金額을 基準으로 한다.

다만, 所長은 吊慰金에 대하여는 死亡의 原因 및 유가족의 生活狀態 등을 參酌하고 慰勞金에 대하여는 負傷의 原因 및 勤勞成績·行狀을 參酌하여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最高支給額과 最低支給額 중에서 擇一하여 申請할 수 있다. 이 때에는 所長의 意見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3條(申請要領) ① 所長은 吊慰金 및 慰勞金을 支給하여야 할 사유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吊慰金은 別지 1호 서식에 의하여, 慰勞金은 別지 2호 書式에 의하여 支給申請書를 法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吊慰金 支給申請書는 死亡者에 대한 死亡診斷書(死體檢案書)와 參考人 調書를 添附하여야 하며, 慰勞金 支給申請時는 負傷者에 대한 診斷書와 本人의 陳述書 및 身體障害 說明圖와 參考人 調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4條(吊慰金 受給者) ① 吊慰金 受給者를 規定한 行刑法 第40조 第2項의 相續人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姪姪關係에 있는자 포함),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로서 死亡當時 本人과 같은 호적 內에 있는 者를 말한다.

② 吊慰金 受給權者의 順位는 配偶者, 子女, 父母, 孫, 祖父母 및 兄弟姉妹의 順에 의한다.

③ 所長은 吊慰金 支給決定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相續人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相續人 印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第5條(慰勞金 支給) 所長은 慰勞金 支給承認을 받았을 때에는 본인에게 告知하고 監護者 勤勞補償金 計算規則 第6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다.

第6條(支給臺帳 備置) 吊慰金 및 慰勞金은 別지 제3호 서식에 의한 吊慰金 및 慰勞金 臺帳을 作成·備置하고 支給狀況을 記錄하여야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198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1) 이 規則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規則 改正 以前에 發生한 事件으로 이 規則 改正 當時에 支給되지 않은 事件은 이 規則에 의하여 支給한다.

<별표 1>

조위금 및 위르금 지급 구분표(개정, 83.2.14)

종류	구분	신체장애 등급	최저액	평균액	최고액
조위금	사	1호	1,000,000	1,308,000	1,962,000
		2호	790,000	1,104,000	1,656,000
		3호	450,000	672,000	1,008,000
		4호	200,000	324,000	486,000
		5호	60,000	108,000	162,000

<별표 2>

신체장애등급 구분표(개정, 83.2.14)

등급	신체장애 구분
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신체장애 등급표)의 제1급, 제2급에 해당되는 자
2호	제3급, 제4급, 제5급에 해당되는 자
3호	제6급, 제7급, 제8급에 해당되는 자
4호	제9급, 제10급, 제11급에 해당되는 자
5호	제12급, 제13급, 제14급에 해당되는 자

<별지 1>

감호자 조위금 지급 신청서

본 적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종류 및 취업장소	
의명·형명 형기	
사망년월일 및 사망장소	
사망경위	
유가족수	

- 14) (단위: 원)
- 고
 - 1,962,000
 - 2,277,000
 - 1,656,000
 - 1,008,000
 - 486,500
 - 162,000

등급 구분	수급자	주소	성명
금 액	본인과의 관계	연령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19

법무부장관 귀하 소장 한

<별지 2호> 감호자 위로금 지급 신청서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근로종류 및 근로장소	
직명·형명·형기	
행 장 및 근로 성적	
살이 상황	
치르 상황	
등급 구분	참고 사항
금 액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19

법무부장관 귀하 소장 한

<별지 3호> 위로금(조위금) 대장

입소년월일	형명·형기	칭호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년월일	적요	지 금 액		
		수	출	잔

監護者 勤勞成績等級査定規則

예규각업 제248호(81.11.25)

- 第1條(適用範圍) 監護者 勤勞成績等級査定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한 本規則에 의한다.
- 第2條(勤勞成績等級) 勤勞成績等級은 10등급으로 구분한다.
- 第3條(勤勞區分) ① 勤勞는 重勞動과 輕勞動으로 구분한다.
 ② 重勞動에 취업하는 자는 7등급부터 1등급까지, 輕勞動에 취업하는 자는 10등급부터 1등급까지로 하고 다만, 技術이 탁월하고 作業成績이 優秀한 자는 1등급에 편입할 수 있다.
 ③ 職業訓練 教育生으로 選定된 자는 10등급에 편입한다.
- 第4條(昇級 所要期間) ① 等級 昇級所要期間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② 勤勞成績 等級比率表는 별표 1, 근로성적 승급기간 기준표는 별표 2에 의한다.
- 第5條(昇級 所要期間 計算) ① 等級 昇級所要期間은 曆에 의거 計算한다.
 ② 9등급 및 7등급은 취업 초일부터 계산하고 최초 취업일의 총 취업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第6條(勤勞成績 審査決定) ① 勤勞成績은 秀·優·美·良·可로 구분하여 勤勞成績 表의 근로성적 점수를 기준으로 審査 決定한다.
 ② 勤勞成績 점수의 採點은 總點單位로 하며, 근로성적 等級比率表에 의한다.
 ③ 等級比率는 취업장 單位로 배분한다.
 ④ 勤勞等級 日課表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
- 第7條(勤勞取消 등) ① 勤勞成績 및 行刑成績이 不良한 자는 근로 取消 또는 等級을 降級하거나 滯級할 수 있다.
 ② 滯級期間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강급은 1등급에 한 한다.
- 第8條(勤勞區分 變更) 重勞動에서 輕勞動으로 勤勞를 變更하였을 때에는 變更前 等級에서 2등급 降級 編入하고, 輕勞動에서 重勞動으로 근로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전 等級에서 2등급 昇級 編入한다.
- 第9條(昇級 査定) ① 昇級査定은 個人別 근로성적 점수 24점을 取得한 때에 實施한다.

<별지 2호>

근로실적 점수진계표

칭호번호 성명

계월 의 수	년월일	등 급									
		1	2	3	4	5	6	7	8	9	10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총 계											

<별지 3호>

근로등급 사정 신청서

19. 년 월 일 제 -공장			근로 담당자 ㉞		기술지도 담당자 ㉞		
사 경	현등급	근로종목	근로성적	현 등급 취업기간	칭호번호	성 명	
소장	과장	승동급					

監護者 勤勞補償金 計算規則

예규작업 제249호(81.11.25)

- 第1條(適用範圍) 監護者 勤勞補償金의 計算은 다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本規則에 의한다.
- 第2條(勤勞補償金 計算) 勤勞補償金 計算은 就業初日부터 計算하고 昇級 降級 또는 滯級者는 결정일부터 計算한다.
- 第3條(勤勞補償金 日額) 勤勞補償金 等級別 基本日額은 별표 1과 같으며 勞作業 類別 作業種目은 별표 2와 같다.
- 第4條(補償金 計算月額) 勤勞就業日의 月間 補償金 日額總計를 보상금 計算 月額으로 한다.
- 第5條(加減 計算) ① 延長作業에 就業한 자에 대해서는 時間의 比率에 의하여 增額 計算한다.
② 監護所 또는 個人事情에 의하여 1일 취업시간수(8시간)에 미달된 자는 實 就業時間 비율에 의하여 減額 計算한다.
③ 勤勞就業 중 職業訓練 教育生으로 選定된 자의 근로보상금 計算은 當該 等級 計算액의 1/2로 減額 計算한다.
- 第6條(補償金 記帳) ① 作業課長은 勤勞補償金 計算月額을 翌月 5일까지 歲入 歲出外 現金出納公務員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歲入 歲出外 現金出納公務員은 個人別 근로보상금 臺帳에 記帳하고 領置金과 는 別途의 계정을 설정하여 영치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 第7條(端數 削除) 個人別 計算月額中 1원미만의 端數는 削除한다.
- 第8條(告 知) 勤勞作業等級 및 補償金 計算月額은 익월 10일까지 本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 第9條(行政事項) 勤勞補償金 計算通知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며, 근로보 상금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附 則

이 規則은 1981. 11. 25 부터 시행한다.

<표 1>

근로상차 등급별 기본임액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250 직업훈련 (교육생)

<표 2>

근로직업 유별 증액표

구분	작업종목
1부 (노동)	목공, 인쇄공, 철공, 망상공, 축산공, 보루보공, 위생부, 전공, 취사부, 보일러공, 세탁부, 영선부
2부 (노동)	양재공, 청소부, 경리부, 이발부, 간병부, 원예부

<표 1호>

근로보상금 통보서

년 월 분

연월일	적요	보상금 계산금액	작업 종류	징호 번호	상명

사회보호법 폐지 관련 법안과 검토의견

범죄행위를한심신장애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
(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
----------	-----

발의연월일 : 2003. 7.
발 의 자 :
찬 성 자 :

제안이유

현행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이중처벌이라는 비판과 그 집행실제 있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아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해 방치될 수밖에 없게 된 치료감호대상자인 정신질환 범죄자 등에 대하여 감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그의 사회복귀를 돕고 정신질환자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심신상실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치료보호대상자로

함(안 제2조제3호).
나.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의 정신장애상태를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상실등으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보호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보호청구만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치료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기각을 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법원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사.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안 제20조).
아. 치료보호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피치료보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판사가 지정한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